

종부세 강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학년 확대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10년으로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

2021년 신축년 새해, 정부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신설 및 개정했다.

기획재정부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36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274개의 법규 사항을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정리했다.

투자하면 세액 공제↑ 종부세 인상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조기 예측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재설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했다.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일반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전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9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1개)를 하나로 합쳐 재설계했다. 내년부터 토지·건물·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에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사업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생산성 확보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충분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제도가 1년간 한시 적용된다. 중소·중견기업은 설비투자 자산 전체, 대기업은 연구개발(R&D) 설비와 같은 혁신 성장 투자자산이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한다. 과세 표준 전 구간에서 0.1~0.3%포인트 사이의 인상률을 적용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2.8%포인트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된다.

현행 1년 미만 보유 해당 주택에 40%, 2년 미만에 70%의 양도소득세율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금융·재정·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설 자산 범위 확대, 투자증기분신사업 투자 인센티브 강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인상 • 부가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 •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 세율 42% → 45%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일부 금융상품에만 6대 판매원칙 적용 →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교육·보육·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 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지원 연 720시간 → 840시간
행정·안전·질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강화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 처벌, 범죄현장 대응 규정 개선 등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등초본 등 13종 → 소득금액증명·장애인증명서 등 100종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한 개의 웹사이트 접속해 정부의 각종 혜택 확인
농림·수산·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1일 인건비 7만원 → 8만원 •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6개월 이내 월 30만원 • 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환경·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시간 단위 단기예보 • 투명프트별 별도 분리배출 시행
산업·중소기업·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적합, 부적합 2단계 → A~E 5단계 •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확대 개별 분전함·차단기·옥내 배선 등 •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보건·복지·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소득하위 40% → 70% 이하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4학년 대상, 3년간 6개월에 1회 구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률 10%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취업지원 서비스+생계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대상 확대
국토·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심의 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 •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자료: 기획재정부

인공지능 지향하는 교육 정책 고등학교 무상 교육

교육부는 자율주행, 빅데이터, 머신러닝 등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전환에 빌미로 AI시대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한다.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듯한 지능화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한다. 그밖에 AI 인재 양성 지표를 개발하고 ‘교육빅데이터위원회’가 출범한다.

현재 고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부터 모든 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된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를 제외한 초·중·고교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나뉘었던 지원항목을 통합하고 학생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 했다. 지원금액도 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 인상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도입 차세대 와이파이 조기 공급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직접 본인의 행정정보를 주도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2021년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10종의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온라인 수업 등)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비하기 위해 차세대 와이파이(Wi-Fi) 주파수로 6GHz 대역 1200MHz 광대역폭을 조기 공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제도’ 실시해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와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결합해 제공하는 I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II 유형으로 운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을 적용하는데, 6월 양도분부터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6월부터 1세대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더한 세금이 부과되고 1세대 3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30%p가 더해 부과된다.

소득재분배와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올해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2%에서 45%로 3%포인트 올린다.

그밖에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 인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 활성화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도 인하한다. 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가 현행 0.1%에서 2023년 0%, 코스닥이 현

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낮아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19세 이하 거주자도 가입을 확대해 근로소득 있는 학생도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했다. 계약기간을 종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을 허용했다.

올해 3월 25일부터 금융권 금융소비자권익에 관련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 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를 포함한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해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한다.

위반 시 수입의 50% 이내의 징벌적 과징금 부과근거가 신설됐다.

그밖에 뉴딜 인프라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금액(2억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